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100004-0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2024.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100004-0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2024.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안내 사항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12. 3. 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분야)」 발간
'12. 12. 개정	CCTV 설치 금지 장소 구체화 등 내용 보완
'15. 1. 개정	안내판 설치 장소 구체화 등 내용 보완
'20. 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소관 부처 변경(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 4.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열람 사례 추가 등 내용 보완
'24.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 시행) 사항 반영
'24. 12. 개정	기존 발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분야)」를 통합 개정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함)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2024.12.

문의처

본 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4)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26조 및 제27조의3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C O N T E N T S

Ⅰ **개요** **5**

1. 제정 목적 ····· 6
2. 용어 정의 ····· 6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11**

Ⅲ **항목별 세부내용** **13**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14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 16
3. 임의조작·녹음 금지 ····· 17
4.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20
5. 안내판의 설치 ····· 21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25
7. 관리책임자 지정 ····· 26
8.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27
9.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28
10. 보관 및 파기 ····· 32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34
12. 열람등의 청구 ····· 35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39
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40

Ⅳ **활용 안내사항** **43**

별첨 **45**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45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 47



Ⅰ

개요

Ⅰ 개요

1 제정 목적

이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

※ 본 안내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는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표준지침'으로 표기함

용 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표준지침 제2조제9호).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표준지침 제2조제10호).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표준지침 제2조제11호).

■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장 등 비공개 장소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적용예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

참고 | “공개된 장소”의 예시

-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참고 | "비공개된 장소"의 예시

-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적용예시 순수한 사적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1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지??

답변 :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Q2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답변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택시나 버스 등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답변 :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따라서, 회사 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시) 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Q4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설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Q5 특정한 조건(예: 모션감지) 하에서 촬영되는 경우?

답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CCTV를 24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연속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특정한 조건 하에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 모두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촬영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항목별 세부내용 1, 2 참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항목별 세부내용 3 참조)

■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항목별 세부내용 4, 5 참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항목별 세부내용 6, 7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별 세부내용 8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9, 10 참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11 참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항목별 세부내용 12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점검 현황 등록
(항목별 세부내용 13, 14 참조)

Ⅲ

항목별 세부내용

Ⅲ 항목별 세부내용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조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법 제25조제1항제3·4·5호).

※ ‘시설 안전’에는 시설물의 안전 외에도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이 포함되며, ‘시설 관리’에는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등과 같은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관리사항이 포함됨

참고 | 정당한 권한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사례

-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공공기관이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을 목적으로 도로상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법령상 교통단속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이 단속 목적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진입로 도로상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교통단속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에 단속 목적 CCTV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이유로 인접한 개인 소유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물과 관련없는 개인 소유지나 민간사업소를 비추지 않도록 CCTV 촬영 범위 및 각도 등을 조절해야 함

-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소유지나 사업소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CCTV 설치·운영 시 다른 사람의 소유지나 사업소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 범위 및 각도 등을 조절해야 함

Q1 **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마음대로 CCTV를 설치·운영하여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답변 :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된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 상가 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주인이 관리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설치·운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구밀집도 분석, 디지털 광고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등 산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제6호, 시행령 제22조제1항).

※ (예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Q2 | **방문객 수 집계를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아니하면서 방문객 수 집계 등 통계값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호법 제25조 제1항제6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25조제2항).

Q1 | **범죄 예방·시설 안전을 위해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 가능한지?**

답변 : 원칙적으로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7쪽 참조).

Q2 | **옷을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휴게실의 경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답변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은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를 예시적 나열한 것입니다.

찜질방의 불가마 외부 공간에서 옷을 입고 출입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물품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최대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2항).

※ 개별 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관련조항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허용**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3 임의조작·녹음 금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제5항).

Q1 **교통단속 위반행위 처분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녹음이 가능한지?**

답변 : 공공기관의 사무실이라도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Q2 **고질 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 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답변 :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됩니다(법 제25조제5항).

Q3 **민원실에 설치한 CCTV로 방문기록 등을 촬영할 수 있는지?**

답변 : 공개된 민원실에는 범죄 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바, 방문기록을 촬영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기존 CCTV로 방문기록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난 촬영이므로, 이 경우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Q4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촬영하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촬영이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하는 상가의 출입문을 비추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Q5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길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한지?

답변 :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타인이 통행하는 길거리까지 비추고 있다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길거리나 다른 집 대문 등을 비추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Q6 CCTV의 줌(Zoom) 기능이나 촬영방향 전환 기능은 이용 가능한지?

답변 : CCTV를 당초 설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당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인도(人道), 골목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방범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신의 정당한 권한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비록,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공개된 장소 및 교도소·정신보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관련조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필요한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Q1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시, 개인정보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답변 : 구(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전 협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8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의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표준지침 제38조).

관련조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추가시 필요한 절차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2. 새로 추가된 목적을 포함하여 안내판에 기재된 내용 현행화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조항 법령상 구금·보호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대상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5 안내판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적용예시 안내판 설치시 유의사항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Q1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형 및 이동형으로 세분화되었는데,이에 따라 안내판 표기도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시, 법정 용어인 '이동형' 및 '고정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나, 사회 통념상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미하므로 기존 안내판에 "CCTV"로 표기된 명칭을 "고정형 CCTV" 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 안내판 설치 장소의 예시

- 건물 : 건물 1층 출입구 또는 정문, 기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각 층의 출입구,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
- 건물 외의 장소(공원 등) : 각 출입구, 기둥 또는 시설물 등 눈에 잘 띄는 곳
- 상가 : 주(主)출입문,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곳
- 버스 등 대중교통 : 승하차 출입문, 버스 내 노선도 옆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택시 : 보조석 앞, 좌석 머리받침 뒤편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주차장 : 입구, 정산소, 주차장 내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

■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표준지침 제43조제1항).

관련조항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1항).

※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主)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경우, 출입구마다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

Q2 | **매장 내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지?**

답변 : 매장 내부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지침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39조제3항).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2항).

관련조항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가능한 경우**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02-○○○-○○○○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업체, 02-○○○-○○○○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관련조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4항).

관련조항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Q3 국가보안시설인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국가보안시설인 경우에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민원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로 민원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 표준지침 제36조제1항).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관련조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관련조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7항, 표준지침 제36조제2항).

7 관리책임자 지정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표준지침 제37조제1항).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표준지침 제37조제3항).

8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집 목적 내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내 제공이 가능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Q1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투기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공기관이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확인을 위해 인근 주민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게 CCTV 영상의 일부를 확인시키고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9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1항, 표준지침 제40조).

Q1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자료를 민원인(고객) 방문 여부 확인을 위해 열람·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0조).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됨(민간분야는 적용 제외)

Q2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자연재난(태풍, 홍수, 낙뢰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수색·구조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방서, 119 구조대 등)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관련

Q3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표준지침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등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자료를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를 거쳐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례1) 폭행, 상해, 도난 등의 긴급한 범죄발생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단, 경미한 사고 등으로 CCTV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사례2) 범죄(분실 지갑의 무단 취득은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확인·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다만, 범죄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자는 이를 범죄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사목적으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제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본인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놀이터 등 공용부문에 임의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근거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비록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15조, 표준지침 제42조제1항).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기록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개인정보의 항목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8.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 일자
9.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단, 8 ~ 9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됨(민간분야는 적용 제외)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4항, 고시 제2조).

  ※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법적 근거·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게재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 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신

  ※ 건별 통보 곤란시,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분기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 일괄 회신 가능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 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 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공기관간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준수사항**

-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다만, 재난이나 범죄 대응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간 사전협의하에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 가능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요청·제공 절차**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는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히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10 보관 및 파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표준지침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해당 기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1조제2항).

Q1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답변 : 반드시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2조제2항).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 파기시 기록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법 제25조제8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적용되며, 민간분야는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적용됨

관련조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 제26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

관련조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공개방법

1.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또한,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26조제4항·제5항).

12 열람등의 청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1항, 표준지침 제44조제1항).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1항).

■ 정보주체는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1항·제3항 표준지침 제44조제3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3항).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4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4항).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6조).

Q1 **본인의 영상자료 열람 요청시,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답변 :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때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식별처리에 대한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민원인 또는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답변 : 민원인 또는 고객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적용되지만 민간분야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적용됨)에 한하여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9.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참조, 28~32쪽).

* 범죄(분실 지갑의 무단 취득은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므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제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5항 및 제45조).

관련조항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예 :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법 제6조).

Q3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표준지침 제47조).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관련조항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괄호안의 내용은 안전한 저장 전송 방법의 예시를 든 것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 기술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중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생략 가능합니다(표준지침 제47조제1호).

관련조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8조제3항).

관련조항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8조제1항)

※ 매년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등록(시스템 등록으로 통보 갈음함)

■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지침 제48조제1항과 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8조제2항).



Ⅳ

활용 안내사항

Ⅳ 활용 안내사항

■ 본 안내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취급하는 현장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용 교재로 활용 가능

■ 본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조치사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장

■ 본 안내서 관련 상담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국번없이 ☎118)로 문의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의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_____(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24년 O월 OO일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이용·제공 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내용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출력물 또는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등 포함)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 (예: '24.OO.OO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
  (예: '24.OO.OO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 (예: OO과 OO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예: OO경찰서 OO계 OO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CD, USB), 기타(OO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이용·제공 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예: 이용기간 '24.OO.OO~OO.OO)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 (예: 파기예정 '24.OO.OO)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예: 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4.OO.OO,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4.OO.OO),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4.OO.OO)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4.OO.OO) 받은 후 파기함('24.OO.OO,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4.OO.OO)"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디 자 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여성기업

※ 최신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